

인재양성 장학금 운영 규정

제1조 장학금 종류 및 대상

1. 대학(원)생 장학금: 국내 정규대학교 학부과정(2~4년제) 또는 정규 신학대학원 학생
2. 청소년 장학금: 중·고등학생

제2조 장학금 수여 기준

1. 대학(원)생 장학금
 - 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
 - ②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자 또는 교인의 자녀
 - ③ 본 교회 부서 또는 기관에서 봉사 중이거나 봉사 경력자 또는 그의 가족
 - ④ 한 가정 당 1년에 1명 선발
2. 청소년 장학금
 - 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
 - 가.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 - 나. 한 부모가정 또는 조부모 가정
 - 다. 장애부모 가정
 - 라. 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
 - ② 성적 또는 예·체능 등의 분야에서 능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에 뜻이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
 - ③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자 또는 교인의 자녀
 - ④ 한 가정 당 1년에 1명 선발

제3조 장학금 지급 주기 및 지급 횟수

1. 대학(원)생 장학금
 - ① 연 1회
 - ② 수혜 대상은 1인당 최대 2회에 한함
 - ③ 본 교회 교역자는 기간, 횟수에 관계없이 전 기간 적용함

2. 청소년 장학금
 - ① 월 1회 최대 1년에 한함
 - ② 필요시 최대 1년 연장

제4조 장학금 지급 금액

1. 대학(원)생 장학금
 - ① 대학생 연 200만원
 - ② 대학원생 연 300만원
2. 청소년 장학금
 - ① 1인당 최대 연 300만원을 원칙으로 함
 - ② 단,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

제5조 시행 공지 및 신청

1. 대학(원)생 장학금
1월 마지막 주 후보 및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신청
2. 청소년 장학금
1월 첫째 주 후보 및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중 수시 신청

제6조 지급 시기 및 방법

1. 대학(원)생 장학금
3월 중 등록 확인 후 본인 또는 가족의 은행계좌로 송금
2. 청소년 장학금
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의결 후 다음 달부터 가족의 은행계좌로 송금

제7조 제출 서류

1. 대학(원)생 장학금
 - ① 장학금 신청서(교회양식) -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

- ② 재학 증명서, 성적 증명서
- ③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
- ④ 가족증명서(비교인인 경우)

2. 청소년 장학금

- ① 장학금 신청서(교회양식) -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
- ②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또는 대회 수상경력 등 우수한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-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④ 한 부모 가족증명서
- ⑤ 다자녀 가정(주민등록등본)

제8조 대상자 선정

교육부 부장 주관으로 담임목사, 교구 담당 교역자, 선교부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자 선정

제9조 부칙

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함.

포이에마예수교회 교육부(직인생략)